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83
----------	-----

2017. 9. 11(월)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봉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7년 8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9월 4일

-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봉순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7. 7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8. 30일 시행)이 개정되어,
- 지역 차원의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
 -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안 제2조)
-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안 제3조)
- 전기 사용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의 구체적 표시방법(안 제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표시방법의 완화 및 강화(안 제18조 및 안 제21조)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안 제20조)
-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안 제22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 등(안 제23조 및 안 제24조)
- 광고물 실명제(안 제26조, 수수료(안 제27조) 등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 법률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 및 같은 법 시행령(2016.7.6.)이 개정되어, 지역 차원의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첫째,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옥외광고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둘째, 관련법령에 의거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규정 개정,

셋째,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과 광고물등의 면적 산정 기준마련

넷째, 안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의 구체적 표시방법

다섯째,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구체화 및 표시방법의 강화

여섯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일곱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여덟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명시

아홉째, 광고물 실명제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차원의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83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358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8월 21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3
----------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 의 자 : 박봉순, 연철흙, 김학철,
박한범, 이연구, 이종욱,
임병운

1. 개정이유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7. 7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8. 30일 시행)이 개정되어,
- 지역 차원의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
 - －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안 제2조)
-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안 제3조)
- 전기 사용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의 구체적 표시방법(안 제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표시방법의 완화 및 강화(안 제18조 및 안 제21조)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안 제20조)
-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안 제22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 등(안 제23조 및 안 제24조)
- 광고물 실명제(안 제26조, 수수료(안 제27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유통산업발전법」, 「항공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2017년 8월 8일 ~ 8월 18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간판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판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 간판 1개

3. 제10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하여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야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

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이 의뢰하는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도의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5조제11호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높이는 해당 옥상 바닥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고,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 나목·다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소의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시지역 안의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5.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영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 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0.5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철도역·공항·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의 경우 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 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3호의 표시방법에 따라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

나.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 또는 도 및 시·군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0.4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7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3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시 지역은 7층 이하, 군 지역은 5층 이하의 층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3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간판의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0.5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0.3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며, 건물의 전면 가로 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0.3미

- 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0.7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0.5미터 이하, 세로 0.7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지정게시대·지주·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시

를 가리는 방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사·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

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애드벌룬은 수평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4호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나. 철도역·공항·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해당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며,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영 제16조에서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2. 가로크기는 0.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0.4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여야 한다.
3.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
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4.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

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수가 제한사항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합
3. 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7.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8. 지상 변압기합
9. 도로명 안내시설물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이해관계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특정구역 지정관련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청사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장려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대상전 등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도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도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

(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도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도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3. 소위원회 위원은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도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⑨ 도지사는 제6항 및 제7항의 도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도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도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전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이용 간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6조(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부과대상이 되는 광고물이 소재한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와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9조(광역단위 광고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한 위임) ①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광고물등이 표시된 지역 등의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임받아 실시한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호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따른 역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별표 2]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수수료(제28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시 지역)	수수료 (군 지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 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을,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중 광고내용 변경은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적용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또는 3년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월 단위 표시기간의 비율을 적용한다.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2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시 지역)	수수료 (군 지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3,000원	20,000원 3,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20%를 가산하며,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40%를 가산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1년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또는 안전점검 불합격 광고물등에 대한 재점검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 결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 사 구 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안전점검 위탁받은 자(단체, 업소 등)		안전점검 검사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관련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2. 삭제 <2016.7.6.>
-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6.7.6.>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

- 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의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의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3. 은행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

□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II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급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록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6.2.13.]

□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④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3.3.23.>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장 변 상 천